

의안번호	2207365
의 퇴 인	김위상의원
회 답 일	2025.1.15.
추계번호	24B6433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 (학교환경교육의 실시)	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10조의3 (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)	-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0조의2 (학교환경교육의 실시)	—	- 환경부에서는 「기후환경교육 지원 사업」을 통해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4억 4,200만원임 - 환경부에서는 이미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계에서 제외함
2	안 제10조의3 (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환경교육을 3년 단위로 평가할 경우,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이 예상됨
- 안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범위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와 관련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
-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모든 학교에 적용가능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및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되어야 하나, 학교장 등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학교환경교육에 일관되게 적용될 평가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